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2권  
2009년 5월 pp.337~364

논문접수일 2009.04.30  
논문심사일 2009.05.13  
심사완료일 2009.05.23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부과 사례에 관한 연구

김 희 길\*

---

### I. 서 론

- II. 반덤핑방지관세의 법원(法源)과 현황
  - II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부과 판정 사례
  - IV. 결론 및 시사점
-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貿易救濟制度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

\*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덤픽방지관세 제도란 외국의 수입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픽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픽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sup>1)</sup>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반덤핑관세부과조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다. 과연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GATT 규정과 WTO협정에 부합되고 또한 피해당사국인 국내의 법령에서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무역구제의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또는 소비자보호측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여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덤픽부과조치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3월 현재로 백상자와 폐로실리콘망간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덤픽방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덤픽관세와 관련한 Byrd수정법을 제정해 이를 적용하다 최근 동 법안이 국내외적 압력에 의해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EU 가입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경우는 덤픽방지관세부과가 관련 산업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2)</sup>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우리나라 무역구제 조사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을 선택하고, 그리고 발생되어진

1) 관세법 제51조(덤픽방지관세의 부과대상)참조

2) 유럽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현재 유럽의 철강제조업체들이 아시아의 값싼 철강수입을 제한하려고 보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유럽철강제조업연합 Eufer(The European Confederation of Iron and Steel Industries)에서는 유럽의 가격보다 약 25%낮은 가격의 중국 철강에 대해서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스웨덴 테크닉기업체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철강은 테크닉기업체의 중요한 자재이다. 보호무역과 반덤핑조치는 스웨덴의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전통에 완전히 맞서는 일이다. 테크닉기업의 회원기업들은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34,000이 넘는 기업들이다. 전자통신, 철강기업, 전기, 산업용 기계, 컴퓨터, 전력기업, 기구산업, 안경, 자동차, 운송 등의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에 종사하는 고용인의 합이 300,000명이 넘는다. 이 기업들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스웨덴의 경제발전에 핵심기업들이다. 스웨덴 수출의 50%이상을 이 기업들이 맡고 있다. 유럽에서 철강 제조기업에서 종사하는 고용자가 25만 명인데 비하여 테크닉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7백만이 넘는다. 수입제한은 철강제조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단 철강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http://www.teinkforetagen.se/templates/page..1129.aspx>. <http://www.teknikforetagen.se/templates/> News-2904. aspx. by Karin Fjel. 2007.10.15).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실제적 사례를 발췌하여 이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반덤핑관세부과의 선행적 연구에 대한 검토를 서론 부문에서 하였으며,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법원(法源)이 되는 실체법의 존재에 관하여 국내외적인 관계법령을 제2장에서 조명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진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한 자료를 역시 제2장에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제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2장과 연계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에 발생되어진 국제적 경제위기는 그동안 큰 무리 없이 발전되어온 자유무역의 확산을 가로막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요인을 잉태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자유무역의 큰 혜택인 소비자잉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 부문이라는 특성이 있어 비교적 무역마찰을 적게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지만, 반덤핑관세부과의 빈번한 발생은 자유무역 진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면서 제4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2001년 이후 세계무역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뚜렷해짐에 따라 반덤핑조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반덤핑조사 신청건수가 1987년부터 2008년 12월말 까지 29개국에 189건으로 중국 45건, 일본 35건, 미국 23건, 대만 10건으로 특정국가에, 화학 57건, 섬유 24건, 철강금속 21건, 제지류 21건, 전기전자 10건 등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중국의 반덤핑법에 관련한 연구 중 주요한 것으로 전의천 · 김석민<sup>3)</sup>, 송희영<sup>4)</sup>, 백탁선<sup>5)</sup>, 김정수 · 서동균<sup>6)</sup>, 이정표 · 손성문<sup>7)</sup>, 조종주<sup>8)</sup>, 차경자<sup>9)</sup>, 김종우<sup>10)</sup>,

3) 전의천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제소의 운용과 법원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pp.331-349.

4) 송희영, “중국의 반덤핑 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한 · 중 양국간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pp.23-45.

5) 백탁선,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의한 수입규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7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2, pp.359-377.

최석범<sup>11)</sup>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광민<sup>12)</sup>이 있으며, 반덤핑제소사례분석으로는 김승호<sup>13)</sup>, 윤주환·안민호<sup>14)</sup>, 유기석·박문구<sup>15)</sup>, 유기석 외 2인<sup>16)</sup> 등의 연구가 있다. <표 1>은 반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법과 소송에 관한 상기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중국의 반덤핑법 관련 연구의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았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승호의 연구는 판례해설을 중심으로, 윤주환·안민호는 화학섬유산업분야에서 최초의 반덤핑제소의 사례를 절차적 요건 관련과 실체적 요건 관련 쟁점으로 분석하였고, 유기석·박문구는 반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 준비부터 최종판정까지의 경험사례를, 그리고 유기석 외 2인은 대두유반덤핑관세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고 그 후 발생되는 수출자·수입자 및 신청인간의 첨예한

- 6) 김정수·서동균,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 pp.45-67.
- 7) 이정표·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173-198.
- 8) 조종주, "중국의 반덤핑 사실과 절차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3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8, pp.152-182.
- 9) 차경자,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체국제도 연구-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6 2, pp.269-296.
- 10) 김종우, "중국반덤핑제도와 WTO규정과의 부합성", 「경영법률」 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pp.561-590.
- 11)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30호, 무역위원회, 2008년 봄호, pp.32-79.
- 12) 이광민,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쟁송법적 고찰", 「무역구제」 제27호, 무역위원회, 2007년 여름호, pp.152-178.
- 13) 김승호, "한국 - 인도네시아산 특정지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DS312, 2005, 10. 28.) 판례해설", 「무역구제」 제21호, 무역위원회, 2006년 봄호, pp.92-128.
- 14) 윤주환·안민호,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반덤핑 제소 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27호, 무역위원회, 2007년 여름호, pp.179-210.
- 15) 유기석·박문구, "중국·미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29호, 무역위원회, 2008년 겨울호, pp.182-190.
- 16) 유기석·박문구·김찬우, "아르헨티나·미국·브라질산 대두유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31호, 무역위원회, 2008년 여름호, pp.136-185.

논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들은 단편적인 부분만 취급하고 있지 제소에서 소송까지의 전단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절차적인 전 과정을 다루고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중국의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사와 한국의 주식회사 옥타인터내셔널이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 서울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가 기각되고 각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전의천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제소의 운영 현황과 법원, 덤프의 판정과 피해의 결정 및 반덤핑조치차원에서의 평가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송희영	한국과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반덤핑규제, 반덤핑제도의 활용전망 및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탁선	중국의 반덤핑법 제정과정과 특징, 반덤핑조치의 운영현황과 전망 그리고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수 · 서동균	산업피해조사에 관한 중국 규정과 WTO협정의 반덤핑 비교 통하여 중국 산업피해조사규정의 문제점과 통상법적 대응방안을 논하고, 그 방안으로 WTO제소, 무역구제협력회의 기능 강화 및 FTA체결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표 · 손성문	중국의 반덤핑 조례 제정과 개정과정, 2004년 반덤핑조례의 주요 특징과 신 반덤핑조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조종주	중국의 반덤핑의 법적 기반과 조사기관, 개정된 반덤핑조례의 주요 내용,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과 조사절차 및 조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차정자	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중심으로 비시장국가와 대체국제도의 개념과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EU의 대체국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김종우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반덤핑조사 관련규정에 대하여 WTO규정과의 부합성을 다루고 있다.
최석범	중국의 반덤핑 법률의 체계와 운영주체, 반덤핑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다루고, 문제점을 비시장경제체제, 반덤핑법률체계상 그리고 법규내용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	주요 내용
이광민	덤핑방지관세에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쟁송법적 쟁점이 존재하는데,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김승호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판례를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과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윤주환 · 안민호	국내무역구제 절차에 있어서 화학섬유산업분야에서 최초의 반덤핑 제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대만 · 말레이시아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반덤핑 제소사례를 절차적 요건 관련 쟁점과 실체적 요건 관련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유기석 · 박문구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가 중국 · 미국 · 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반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 준비부터 최종 판정까지의 단계별로 등장한 핵심쟁점에 대해서 경험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유기석 · 박문구 · 김찬우	2006년 대두가공협회가 아르헨티나 · 미국 · 브라질산 대두유 반덤핑관세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조사결과, 이후 진행과정에서 반덤핑협의에 대한 최종판정 직전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자인 수출자, 수입자 및 신청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논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 II. 반덤핑방지관세의 법원(法源)과 현황

### 1. 국내법 및 규정

#### (1) 관세법규<sup>17)</sup>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서 덤프방지관세를 부

17) 덤프방지관세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51조-제56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71조, 덤프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경부령 제330호.

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08.2.29일자로 개정된 제51조2 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물품에 대한 덤픽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덤픽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출 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픽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에 관하여 그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덤픽과 관련하여 동법 제23조(덤픽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에서 “덤픽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결정, 덤픽사실의 조사, 덤픽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픽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지식경제부산하 기관으로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 내지 제5

---

18) 관세법 제53조(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을 그 소관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조항과 대비하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3조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에서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에서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자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 2. 반덤핑관련 GATT 규정 및 WTO 협정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실정법으로서의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 또는 협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4.12.16일자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ca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정)을 수락하고 1994.12.31 위 협정을 공포하였다. 이 협정문 부속서 1가에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부 제1조 원칙에서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항<sup>19)</sup> 및 WTO 반덤핑

---

19) Article VI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dumping, by w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s, is to be condemned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to an es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s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 importing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협정(GATT 1994, 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20)에서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무역 구제에 관한 법원(法源)을 제시하고 있다.

### (1) 덤픽의 판정<sup>21)</sup>

덤픽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제2.1조에서부터 2.7조까지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2.1조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픽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덤픽으로 인한 피해의 판정은 제3조에서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sup>22)</sup>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해의 판정<sup>23)</sup>

피해의 판정에 관련하여서는 3.1조에서 부터 제3.8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3.1조에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 하며, (a) 수입물량 및 덤픽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An anti-dumping measure shall be applied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Article VI of GATT 1994 and pursuant to investigations initiated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govern the applic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in so far as action is taken under anti-dumping legislation or regulations.

21)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22) WTO 협정 제4조(국내산업의 정의), 동 협정 제4.1조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를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Article 3 Determination of Injury*

### 3. 반덤핑방지관세의 현황

우리나라는 무역구제 조사신청 건수<sup>24)</sup> 중 반덤핑 조사신청 건수는 189건(구제조치 102건)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44건<sup>25)</sup>, 일본 35건, 미국 22건, EU 22건, 대만 10건 등이다. 산업별로는 화학 68건, 기계전자 35건, 종이·목재 31건, 섬유 18건, 제철금속 15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조사신청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우리나라 조사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관련 건은 13개 국가에서 6개 품목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우리나라 조사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건 내역

(13개 국가, 6개 품목)

연번	품목(제조사)	대상국	신청일	조사진행 현황	비고
1	플로트판유리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중국	'07.3.7	'07.4.23. 조사개시결정 '07.9.17. 예비판정 '08. 1월 공청회예정	원심
2	파산화벤조일 (주)한솔케미칼	중국	'07.4.9	'07.5.17. 조사개시결정 '07.10.24. 예비판정 '08. 2월 공청회예정	원심
3	초산에틸 한국알콜산업(주), 국제에스터(주)	중국 싱가폴, 일본	'07.7.18	'07.9.17. 조사개시결정 '08.1월 예비판정예정	원심
4	PET필름 (주)코오롱	중국, 인도	'07.9.5	'07.10.24. 조사개시결정 '08.2월 예비판정예정	원심
5	크라프트지 (주)이엔페이터, 쌍용제지(주)	중국,러시아, 캐나다,미국, 인도네시아	'07.9.19	'07.10.24. 조사개시결정 '08.2월 예비판정예정	원심

24) 1987-2008.12까지 한국의 무역조사 신청건수는 총498건(구제조치 : 279건)이고, 신청 분야별로는 반덤핑 189(102), 세이프가드 33건(22), 상계관세 1건, 불공정무역행위 272건(88), 무역피해 심위 3건(3)이다.

25)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EU는 2006년에 반덤핑 부과금을 가장 자주 부과시킨 관계자로, 그리고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가장 많이 덤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http://www.europanytt.se>

연번	품목(제조사)	대상국	신청일	조사진행 현황	비고
6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07.8.30 (재경부 접수)	'07.10.24. 조사개시결정 '08. 3월 공청회예정	재심

자료 : Trade Remedy Review 2008-겨울호, p.344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는 23개 국가의 11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3>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 부과중인 품목 세부내역

연번	품 목	대상국	조치내용		비고
			관세율(%)	부과기간	
1	페로실리코망간 ( 1차 재심 )	중국	15.6	'03.12.3~'08.12.2(5년)	
2	수산화알루미늄	일본	가격약속 33.15~65.95%	'03.7.18~'08.7.17(5년)	
3	치아황산소다	중국	11.78~21.07	'04.6.23~'07.6.22(3년) *재경부에 부과조치전의증 ('07.12.14)	
4	스테인레스 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가격약속 15.39%	'04.7.30~'09.7.29(5년)	
5	염화콜린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10.28~27.55	'04.10.20~'09.10.19(5년)	
6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중국	4.82~23.08%	'05.3.2~'08.3.1 (3년)	
7	PVC PLATE	일본	가격약속 27.91~29.70%	'04.12.20~'09.12.19(5년)	
8	산업용 로보트	일본	4.51~10.0%	'05.4.18~'10.4.17(5년)	
9	도자기질타일	중국	2.76~29.41%	'05.12.30~'10.4.17(5년)	

연번	품 목	대상국	조치내용		비고
			관세율(%)	부과기간	
10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2.60~8.69%	'06.10.20~'09.10.20(3년)	
11	자동가이드홀 편침기	일본	4.92%	'06.11.23~'09.11.22(3년)	
12	폴리비닐알콜	미국, 중국, 싱가폴	11.11~35.17%	'06.12.12~'09.12.11(3년)	
13	정보용지 및 백상지	중국, 인도네시아	2.22~7.72%	'07.6.1~'10.5.31(3년)	

자료 : Trade Remedy Review 2008-겨울호, p.345에서 재인용.

### III.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부과 판정 사례

#### 1. 우리나라 생산업자의 조사요청

중국 상하이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사는 중국 현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 소재 관계회사인 상하이 포춘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Fortune Ceramic Co., Ltd)사를 통하여 한국에 도자기질 타일(Ceramic Tiles)을 수출하고 있으며, 옥타인터내셔널은 한국 내에서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의 도자기질 타일을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타일 생산·판매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성일요업(주)은 2005년 4월 29일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 덤픽으로 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덤픽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 2.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

무역위원회는 2005.6.22.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분류번호 HSK 6907.90.1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mm~1300mm 이내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 조사대상 공급자를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 신중원 및 관계사, 신종웨이, 허메이, 하오홍, 양시, 난하이, 시완이글, 달리안, 광동난하이, 메디칼이큅먼트 등 12개 업체로 하여 덤피ング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 덤피ング 및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전제로 최종판정을 하였다. 덤피ング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에 대한 요업(세라믹) 기술원의 시험결과, 물리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건축물 내외장재와 바닥재로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서는 품질 및 소비자 평가, 기능 및 구성요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호대체 사용되고 있어 동종물품으로 판단하였다.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ai ASA Ceramic Co., Ltd) 및 ‘달리안’, ‘광동상하이’, ‘메디컬 이큅먼트’의 4개 조사대상 공급업체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덤피ング률을 산정하는데<sup>26)</sup>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신청서에 포함된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피ング가격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37.40%의 덤피ング률을 산정하였다.

덤피ング수입 이외의 요인에 의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덤피ング수입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국내소비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 수출동향,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이자율의 변동추이 등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산업피해율을 29.41%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무역위원회는 2006.4.17. 조사대상물품의 덤피ング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사 세라믹 코 엘티디(Shangh

---

26)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WTO반덤핑협정문 제6조제8항, 동협정부속서 II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덤피ング률을 산정한다.

ai ASA Ceramic Co., Ltd)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9.41%, 기타 중국 1개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76% 내지 29.41%의 덤픽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sup>27)</sup>

###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아사와 옥타인더내셔널은 피고(이하 재정경제부)가 2006년. 5. 30. 제정·시행한 '관세법 제51조에 규정에 의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픽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sup>28)</sup>중 원고들에 해당하는 관련규정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sup>29)</sup>을 제기하였다. 본 건은 2007년 12월 24일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판결문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 (1) 원고 아사의 이 사건 규칙 적법여부 주장

피고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동종물품'에 대한 해석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이 사건 타일이 국내산 도자기질 타일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보았다. 덤픽을 산정에 대해서도 무역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한 슛타오(Shunde shuntao commerce Co. Ltd)제품과 원고 아사의 제품이 동종제품이라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없으며, 무역위원회는 덤픽차액을 산출함에 있어 관세청의 수입신고가격을 통하여 원고 아사의 수출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대리점 판매가격을 잘못 적용하였다.

한편 산업피해율 산정에 대해서도 피고 산하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덤픽으로 인한 산업피해 이외의 산업피해(대보세라믹스의 잘못된 수요 예측에 의한 과잉설비투자에 따른 덤픽판매 등)를 덤픽으로 인한 산업피

27)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아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2005.12.30일부터 2010.12.29일까지 29.41%의 덤픽방지관세율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정경제부령 제509호 '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하였다.

28) 부과기간 : '05.12.30~'10.4.17(5년)

29) 사건 2006구합29782 반덤핑관세부과처분 취소

해를 포함시킴으로써 산업피해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피해율 산정방식도 잘못되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피해까지 국내 산업피해구제 대상으로 잘못 초래하게 된다고 하고, 원가경쟁력 상실에 기인한 산업피해율을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3조 제5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덤핑 수입피해 여부는 국내 타일생산업체 13개를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산업피해율 산정은 4개 업체의 자료만 사용하고, 그 중 설비투자 실패에 따른 피해부분이 과다한 특정업체의 산업피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제3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율을 산정함에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종판정서에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생산방식, 용도 및 판매가격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시유타일과 무유타일이 이 사건 덤핑방지관세부과의 경우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조사, 처리되어 국내 산업피해지표가 왜곡되어 산출되었다.

원고 아사는 피고에게 관세법 제54조 소정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적정한 가격약속을 제의 하였고, 위와 같은 가격약속 제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가격약속 수락 배제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어떠한 의견 표시도 없이 가격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피고의 주장

재경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함을 제기하였다. 재정경제부령 제509호 '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은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으로 규칙시행만으로는 원고들(아사, 옥타 인터내셔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규칙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관세법 제 12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타일의 생산자 내지 수출자로서 관세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규칙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 옥타의 경우 이 사건 규칙의 발효이후 현실적인 수입행위가 있지 아니하여 위 규칙만으로 관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는바,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4.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sup>30)</sup>

##### (1) 피고 측 주장의 판단

###### (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

법원은 행정입법이나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sup>31)</sup>고 하고, 법 제53조 1항<sup>32)</sup>과 법 제54조 제1항, 제2항<sup>33)</sup>에 의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상 잠정조치의 대상 또는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및 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 (나)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

법원은 피고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치주의의 위반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관세법 제119조와 제120조 제1항 본문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해 처분청보다 하급행정기관이 재결청되는 경우란 상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필요적 전치주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30) 사건 2006구합29782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의 판결문

31) 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8003 판결 참조.

32) 관세법 제 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1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

33)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 247 판결 등 참조.

하고 당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 (다) 원고 적격에 관한 주장

원고 아사는 타일의 공급자로서 직접적으로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관세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규칙은 원고 아사를 그 공급자로 하여 위 원고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29.41%의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아사로서는 이 사건 규칙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 옥타의 경우 덤픽방지관세를 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타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독립적인 수입 판매권을 가진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옥타는 이 사건 규칙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원고 아사 측 주장의 재판부 판단

##### (가) 동종 물품 판단여부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 덤픽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함에 있어 먼저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당해 조사의 객체가 될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및 소성공정(燒成工程) 등을 거쳐 제조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mm-1300mm이내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으로 정의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시료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조사대상업체가 12개 이상이고 각 업체별 제품이 다양함을 감안하여 대표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시험분석을 위한 견본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산6개, 중국산 12개의 시료를 선정하여 치수(길이, 나비, 두께), 흡수율, 꺽임강도, 내마모성, 겉모양,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도, 압축강도, 내균열성 등을 시험항목으로 하여 2005.11초순경 요업기술원에 그 시험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요업기술원이 2005.11.4 부터 같은 달 14일 까지 위 타일 시료들에 대하여 시험 분석한 결과, 국내업체의 생산품과 중국업체의 수출품의 주요

물리적 특성이 각 시험·분석 항목별로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모두 KS규격에 적합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론에 의거 무역위원회는 동종물품으로 판정하였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1항의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2.6조는<sup>34)</sup>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product under consideration)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픽가격의 비교) 및 시행규칙,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동종 물품’ 또는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조사대상물품(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또는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지우는 요소이다. 요업기술원은 타일 시료들에 대하여 시험 분석한 결과 국내업체의 생산품과 중국업체의 수출품의 주요 물리적 특성이 각 시험·분석 항목별로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모두 KS규격에 적합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35)</sup>

3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2.6 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product similar")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respects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under consideration.

35) 아사의 주장은 타일의 가격이 2~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나고, 타일은 그 크기, 문양, 시유여부, 도자기질인지 자기질인지 여부, 폴리싱(연마)여부 등에 따라 그 가격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순한 가격비교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 (나) 덤픽율 산정에 대한 판단

통상 덤픽율은 정상가격과 덤픽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며(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덤픽가격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 즉, 수출가격을 의미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덤픽가격으로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픽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픽방지관세율 또는 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법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픽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즉, 덤픽율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별로 공급국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지만(관세법시행령 제65조), 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만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게 되며(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이 경우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픽율을 가중 평균하여 구하게 된다(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5항은 “...조사 및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는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속서2 제3항은 ‘검증가능하고 부당한 어려움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는 자료만이 판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아사의 제품과 동일규격의 스크린이 생산한 동종 제품의 중국내 내수가격에서 환율과 포장비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조정 후 수출 가격은 조사대상제품의 수입대리점이 발행한 가격 견적서상의 가격에서 보험료, 대리점 마진, 해상운임<sup>36)</sup>, 포장비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조정 후 정상가격에서 조정 후 수출가격(덤핑가격)을 공제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각 모델별 덤핑율을 산정하고, 이를 단순 평균하여 평균 덤핑률 37.4%를 산정하였다.

〈표 5〉 덤핑률 산정

공급국	규격	조정후 정상가격 (A)	조정후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율 (E=C/D × 100)
중국	300x600	5,356	3,859	1,497	4,512	33.2%
	250x400(1G-3300)	3,157	2,359	798	2,845	28.1%
	330x600(1G-6000)	4,640	2,811	1,829	3,433	53.3%
	330x600(3G-6000)	4,947	3,496	1,451	4,119	35.2%
	평균					37.4%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782

아사는 무역위원회가 덤핑율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가격은 일반베타일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자기질 무유 연마타일에 의하여 산정하고 덤핑가격은 자기질 연마타일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저렴한 일반 벽타일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 덤핑율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6)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대한국 수출판매시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하므로 대한국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운반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해외의 수입상이 수출국내의 운송까지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운송조건을 명확히 입증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IF기준을 적용하여 운반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 산업피해율 산정에 대한 판단

무역위원회의 2006.4.17일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팡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덤팡수입물품 이외의 기타국 수입물량 및 가격, 국내소비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 수출동향, 원자재 가격추이, 이자율 변동추이 등을 검토하여, 덤팡수입물품 이외의 기타국의 수입물량 및 가격 등의 요인 등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생산업체의 각 타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6>과 같다.

&lt;표 6&gt; 국내 생산업자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내생산자	비중(%)	국내생산자	비중(%)
(주)대동산업	17.04	(주)서울세라믹스	1.55
(주)대보세라믹스	10.85	(주)상현	7.10
(주)한보요업	4.79	상영산업(주)	8.47
성일요업(주)	2.77	선경산업(주)	2.48
극동요업(주)	8.44	이화산업(주)	5.05
대림요업(주)	5.46	(주)케이티세라믹	8.57
동서산업(주)	17.44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782

무역위원회의 위 2006.4.17일자 최종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무역위원회는 덤팡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사이에 국내산업의 생산량의 증감, 판매량의 증감, 재고량, 가동율,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투자수익, 고용인원, 임금, 자본조달, 설비투자의 증감 등을 검토하여 덤팡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WTO 반덤핑협정 제3조 제4항에서 “덤팡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팡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가를 위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는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 WTO 반덤핑협정3.1조)’에 근거해야 하며 그리고 객관적인 검토(objective examination, WTO 반덤핑협정3.1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반 평가 요소 중 평가요소의 항목이 WTO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항목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문제가 제기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한국의 법원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픽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율,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투자수익, 고용, 임금, 자본조달, 투자축소 등을 피해지표로 하여 자세하게 검토한 후 이러한 검토결과 등을 최종판정 의결서에도 기재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제로 산업피해율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6구합29782).<sup>37)</sup>

#### (라) 가격약속제의에 대한 판단

관세법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 · 수출중지 등의 약속)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픽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 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수정약속 수락여부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37)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덤픽수입물품의 국내 재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업피해율을 산정하였는바[{{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dumping수입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dumping수입물품의 CIF 수입가격(과세가격)} × 100], 이에 따라 산정된 국내산업피해율은 29.41%이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반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법원(法源)과 현황을 검토하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반덤핑관세부과 판정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다.

첫째, 우리나라 생산업자의 조사요청과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과 법원(法院)이 국제법의 법원(法源)과 국내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부과가 합법적으로 부과되었더라도 세계 GDP와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34개의 주요 국가들은 상당히 낮은 관세를 공산품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 중 EU · 미국 · 일본 · 중국 · 캐나다 · 대만 · 홍콩 · 마카오 등은 현재의 낮은 관세율을 향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26개국은 WTO협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현재 8% 수준의 공산품 실행 관세율을 28%(허용 최고치인 양허관세율)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관세율의 적용 허용은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속되어지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국제적인 무역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WTO규정과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한 국내법을 적용하여 실질적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취한 것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상대국(2008년도 대중국수출액 91,388백만달러)인<sup>38)</sup> 중국과의 무역마찰의 요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Byrd수정법의 시행에 따른 반덤핑 · 상계관세조치 제소의 남발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sup>39)</sup>, 이로 인하여 미국의 Byrd수정법이 폐기된 점<sup>40)</sup>,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반덤핑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2번째로 높은 피소국으로 된 점, 그리고 EU

38)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9.3월호, p.132.

39) Dara Klat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on Byrd Amendment Exposes Flaws in Trade Law", CITAC, 2005.

40) 미국의 경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Byrd 수정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미국 세관이 외국 업체들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금을 제소자인 미국 업체들에 배분토록 의무화한 법안인데 주로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제정됐지만 이후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에 폭넓게 적용됐으나 2006년 2.1일자로 미국의회는 베드 수정법 폐지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동안 경과의 일례를 보면, Byrd 수정법에서 2002.10.1일 이후 징수된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수입을 당해 반덤핑 · 상계관세 제소자인 미국 국내 생산자들에게 제조설비 구입,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가맹국인 스웨덴에서 사례 등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WTO협정이나 국내 무역관련 법규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반덤핑관세부과조치의 과도한 활용은 무역상대국가와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것은 향후 중국 및 여타 주요한 교역대상 국가와의 무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역구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덤픽방지관세부과조치가 국내업체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 외국의 업체가 덤픽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sup>41)</sup> 특히 최근에 전개되어진 세계의 무역환경을 보면, 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언제(DA)무역협상결렬은 다자 무역체제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무역국 간의 개별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세계무역시장에서 협상테이블을 제공하고 분쟁 조정 창구 역할을 해 온 WTO의 역할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분쟁 조정에 대한 WTO의 역할이 미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별 무역국 간에 분쟁이 증대되어지고 이러한 분쟁은 결국 탄력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탄력관세 중에서도 덤픽방지관세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대다수의 주요국들이 상당히 낮은 관세를 공산품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직접 시장에서 대면되어지는 물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자유무역에서 누리는 소비자잉여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국민다수에게 돌아가므로 직접소비재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국내의 생산자보호측면보다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자본재에 해당되어지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시장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용이하다고 본다.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주어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

41) 외국 수출업체가 우리 정부가 취한 덤픽판정을 대상으로 국내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인도네시아의 제지 수출업체인 '인다키아트', '핀도텔리', '트지비키미아' 3개사가 2004년2월24일 서울행정법원에 재정경제부 및 무역위원회의 덤픽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덤픽률산정방법 등이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규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향후 체결이 예견되어지는 한·미FTA, 한·중FTA, 한·일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예상하여 본다면 앞의 현황에서 살펴본 공산품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관세 부과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리라고 본다.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세계무역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행의 무역관계법령에서 주어지는 보호막에서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향후의 대책이 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싶다.

## 참 고 문 헌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6
- 김승호, “한국 - 인도네시아산 특정지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DS312, 2005. 10. 28.) 판례해설”, 「무역구제」 제21호, 무역위원회, 2006년 봄호, pp.92-128.
- 김정수 · 서동균,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 pp.45-67.
- 김종우, “중국반덤핑제도와 WTO규정과의 부합성”, 「경제법률」 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pp.561-590.
- 백탁선, “중국의 반덤핑조치에 의한 수입규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7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pp.359-377.
- 송희영, “중국의 반덤핑 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 한 · 중 양국간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pp.23-45.
- 유기석 · 박문구 · 김찬우, “아르헨티나 · 미국 · 브라질산 대두유 반덤핑 제소 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 31호, 무역위원회, 2008년 여름호, pp.136-185.
- 유기석 · 박문구, “중국 · 미국 · 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29호, 무역위원회, 2008년 겨울호, pp.182-190.
- 윤주환 · 안민호, “대만 · 말레이시아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무역구제」 제27호, 무역위원회, 2007년 여름호, pp.179-210.
- 이광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쟁송법적 고찰”, 「무역구제」 제27호, 무역위원회, 2007년 여름호, pp.152-178.
- 이정표 · 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173-198.
- 전의천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제소의 운용과 법원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연구」 제16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pp.331-349.

조종주, “중국의 반덤핑 사실과 절차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3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8, pp.152-182.

차경자,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체국제도 연구-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6 2, pp.269-296.

최석범,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제30호, 무역위원회, 2008년 봄호, pp.32-79.

Trade Remedy Review 2008-겨울호」, 무역위원회, 2008.

관세법(법률 제9261호)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21305호)

관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1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9155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9년 3월호, p.132.

Dara Klat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on Byrd Amendment Exposes Flaws in Trade Law", CITAC, 2005

GATT,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rimmet, J., and Jones V., "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Byrd Amend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5

UNCTAD(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2005.

WTO, "United States-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Report of the Panel", 16 September 2002

<http://www.europanytt.se>

<http://www.teinkforetagen.se/templates/page..1129.aspx>

<http://www.teknikforetagen.se/templates/News-2904.aspx>

## ABSTRACT

### A Case Study on imposing anti-dumping duty against Chinese Ceramic Tile

Kim, Hee Kil

Trade remedy is the system that additional duty or import quantity restriction would be imposed on the import products, in case that unfair imports damage domestic industry or even proper import products damage significantly domestic industry. The system is secured by the act of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 industrial damage remedy, tariff act, WTO agreement. Anti-dumping duty act is the system that duties are assessed with the equal or less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normal transaction price and dumping price, in case that the product imported under dumping price causes or may cause damages in domestic industry, 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hould be delayed practically.

Recently, the problems related with anti-dumping duty imposed as the part of the trade remedy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nti-dumping duty act is practically trade remedy which does comply with GATT regulations and WTO agreements as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and is in line with the intent of domestic act in the suffered country, or it does return to protective trade or reduce the protection of consumer.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impose the antidumping duty on industrial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when considering the expected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US, Korea-China and Korea-Japan.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current severe competition of world trade market, companies should raise the competitiveness by themselves without relying on the current trade acts to provide with a certain protection. This thesis should bring those attentions.

Key Words : Anti-dumping duty, Normal Price, Dumping Price